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팀은 경제법과 법경제학의 이론, 선진적인 EU 및 영국 등의 과징금 부과기준, 공정위의 부과기준 등을 종합·분석, 개선안을 마련하여 11. 7.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위반행위의 유형별 특성과 위반 내용 및 정도, 규제목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위유형별 과징금 부과여부를 판단하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행위, 경쟁제한성이 분명한 행위, 소비자피해가 큰 행위 등의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일반기준을 토대로 5개 행위유형별로 각각 과징

금 부과여부 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둘째, 과징금액은 현재는 역진체감법을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중심으로 과징금액을 산정한 후, 법정 의무적 참작사유를 포함한 비계량적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출의 모든 과정이 평가요소를 계량화하여 이루어지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법정 의무적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3단계로 분류하고, 각각 관련매출액(위반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일정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하였다.

행위유형별 기본과징금

〈부과과징금액 산출 순서〉

- ① **기본과징금 결정:**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를 기준으로 각 행위유형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및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3종으로 분류하여 각 종류별로 정한 관련 매출액(위반액)의 일정비율(또는 일정액)의 금액
- ② **기준과징금 결정(1·2차 조정의 결과 산출된 금액)**

(기본과징금) 관련매출액(위반액)의 일정비율일 경우	일정액일 경우
↓	↓
* 1차조정: (기간·횟수에 의한 가산 없음)	기간·횟수에 따라 10~50% 가산
↓	
* 2차조정: 1차조정후 금액보다 (부당이득등x승수)가 더 크면 → (부당이득등x승수) 금액	
- ③ **부과과징금 결정**
기준과징금을 고의성 등 행위자 요소에 의해 가중·감경 → 부과과징금액 결정
- ④ **최종과징금 결정:** 부과과징금액을 그대로 부과되, 제한적 필요시 추가 감면
* ①~②는 법정 의무적 참작사유를, ③~④는 과잉금지·비례의 원칙을 반영한 것임



그리고 1차로 기본과징금을 법정 의무 적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1차조정 후 산출된 과징금액이 (부당이득등x징벌승수)

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당이득등x징벌승수)의 금액을 기준과징금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매우 중대	관련매출액의 2%	10억원
	중대	" 1%	8억원
	중대성 미약	" 0.5%	4억원
경제력집중억제 위반행위	매우 중대	위반액(출자총액 초과분·한도초과보증채무액 등)의 9%	-
	중대	" 7%	-
	중대성 미약	" 5%	-
부당한 공동행위	매우 중대	관련매출액의 6%	10억원
	중대	" 4%	8억원
	중대성 미약	" 2%	4억원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매우 중대	관련매출액의 1%	5억원
	중대	" 0.5%	4억원
	중대성 미약	" 0.2%	3억원
부당한 지원행위	매우 중대	위반액(부당지원금액)의 70%	-
	중대	" 40%	-
	중대성 미약	" 20%	-

부과과징금은 기준과징금에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결정 (단, 가중·감경은 기준과징금의 상하 50%까지만 가능)한다.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산출된 부과과징금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당해 부과과징금이 시장 상황 또는 기타 객관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많은 경우 추가 감경하거나

면제가 가능하다. 즉,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한 경우에는 50%까지 감경 가능하고,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금년말까지 공정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4. 4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연구용역 결과 현행기준과 다른 점

	현행	연구결과
1.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기준	위반의 정도와 심결례 등을 기준으로 사건별로 판단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사업자·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부과하도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2. 기본과징금액 결정	총매출액 중심으로 역진체감방식에 의하여 결정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하여 관련매출액(위반액)의 일정비율로 결정(관련매출액 산정 곤란시 일정액)
3. 가중·감경	- 위반행위의 성격과 참작사유를 총량적으로 평가 - 무한대로 가중·감경 할 수 있음	- 객관적 조정사유(위반기간등 행위요소)와 주관적 가중·감경사유(고의성등 행위자요소)로 구별 · 각 사유를 구체적 항목으로 설정하여 계량적으로 평가 - 가중·감경의 폭을 기준과징금액의 50% 이내로 제한
4. 과징금액의 수준	<연구결과> - 상향조정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같이 시장경쟁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는 과징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 - 현수준 유지 :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위반행위(출자총액 제한 등), 부당지원행위 - 하향조정 :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사적분쟁의 성격이 짙은 위반행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로드맵(안)은 잠정안으로서 11월중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산업·금융 T/F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12

월중에 최종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확정된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안)』의 주요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 첫째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인척간 지분 보유관계, 기업별·기업집단별 소유지배 괴리도를 매년 공개하여



시장압력을 제고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소유지배 괴리 축소와 기업집단체제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전환 비용을 축소할 방침이고 ▶ 둘째는 기업별 투명·책임 경영의 강화로,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 및 회계 투명성을 매년 측정·평가하고, 회계제도 개선 등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지배주주

보좌기구(구조조정본부)의 기능 및 활동 내용과 경비조달 및 사용내역, 계열사간 비용분담계약 공개를 유도할 계획이고 ▶ 셋째는 시장경쟁의 제고로서, 170여개 경쟁제한적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결합 규율시 독과점 형성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며, 카르텔 차단을 위하여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제보자 보상을 확대하며, 부당내부거래 조사방식을 전환하여 대규모 직권조사는 가급적 지양하되 혐의가 있을 때 수시 조사하여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부처간 기능의 조정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번호이동제 도입과 관련,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해 주의 촉구

2004. 1. 1.부터 이동전화시장에 번호이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입자 유치를 둘러싼 경쟁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번호이동제 도입에 따른 품질·서비스·요금 경쟁의 촉진을 위해서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번호이동제 도입에 따른 경쟁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위반 행위유형은 ▶ 고객의 계약해지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로의 가입전환을 어렵게 하거나 광고전단을 훼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동전화 판매목표량을 할당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인사상 불이익 부과, 판촉비·기본요금 전가 등의 행위 ▶ 부당한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다.

공정위는 향후 번호이동제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발생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범위반 사실 적발시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전화사업자들에게는 범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



pliance Program) 운영 등을 통한 자율적인 공정거래법 준수 노력을 촉구하였다.

※ 번호이동성제도란 이동전화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타 사업자의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003. 10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3년 10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3년 11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3년 10월중 15개 출자총액제한기

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3. 11. 1. 현재 348개로 전월과 동일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3. 10. 1. 487개에서 2003. 11. 1. 현재 488개로 1개사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상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3. 10. 1. 현재 835개에서 2003. 10월중 5개사가 신규편입되고, 4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3. 11. 1. 현재 836개로 1개사가 증가하였다.

[2003. 10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3. 10. 1.	편 입			제 외						증감	2003. 11. 1.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5개)	348	-	4	4	2	2	-	-	-	4	-	348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48개) ¹⁾	835	1	4	5	2	2	-	-	-	4	1	836

* 주 1)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포함



[2003. 10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5개사(주식취득 : 3, 회사설립 : 1, 기타 : 1)

◆ 제외 : 4개사(지분매각 : 2, 합병 : 2)

기업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현 대 자동차	아주금속공업(주)	차량부속물품 제조·판매	주식취득	-	-	-
한 화	한국강구공업(주)	각종 베어링 부품 제조	주식취득	한화투어몰(주)	일반여행업	지분매각
두 산	두산디엔디(주)	반도체장비	주식취득	한국도서보급(주)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지분매각
동 부	동부퍼인셀(주)	2차전지연구개발 제조·판매	기타	동부 다이아이스(주)	정보시스템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합병
				동부 에프아이에스(주)	정보시스템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합병
케이티엔지	케이지씨판매(주)	인삼류 제품 판매	회사설립	-	-	-

공정위 인사동향

발령

◆ 2003. 10. 20.

행정사무관 강 도 영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도과장)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기간 : 2003. 10. 20~별도 발령시까지)